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4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5.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0가단527990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27,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34033호로 양수금 23,652,668원 및 그중 5,399,1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 “D는 원고에게 23,652,668원 및 그중 5,399,18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16. 12. 16. 확정되었다. 한편,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은 2020. 11. 1. 기준 26,827,831원이다.

나. E의 사망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2020. 3. 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D가 있었다.

피고 및 F, D는 2020. 3.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0284호로 2020.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G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7,7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23,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20. 5. 19.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자 기준 26,827,83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E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의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원고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2020. 5. 19.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2020. 11. 1. 기준 26,827,831원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의 공시지가는 512,298,400원(= 108.4㎡ × 4,72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261,000,000원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법정상속분 2/7에 따른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74,571,428원(=

261,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상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26,827,831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26,827,83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6,827,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전지은, 판사 주철현

별지

목록

[토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 108.4㎡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59.12㎡

2층 59.12㎡

지하1층 59.12㎡

끝.

